

2026년 6월 30일(화)

용인시보

차 례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6-1987호 [용인시 장유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고 시

- 용인시 고시 제2026-389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한숲근린공원)]
- 용인시 고시 제2026-390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건강마당근린공원)]
- 용인시 고시 제2026-391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남산근린공원)]
- 용인시 고시 제2026-395호 [[정정고시] 도시관리계획(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 용인시 고시 제2026-397호 [용인 제1 일반산업단지계획(11차 변경) 승인 고시]
- 용인시 고시 제2026-398호 [용인 제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8차 변경) 고시]

● 공 고

- 용인시 공고 제2026-2036호 [용인도시관리계획(중로 1-49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변경) 열람·공고]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용인시장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안 제4조 ~ 제6조)
- 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의 운영 규정(안 제7조 ~ 제8조)
- 라. 시범운행지구의 성과관리 및 지원 방안 규정(안 제9조 ~ 제13조)
- 마. 자료제출 요구 권한 규정(안 제14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예고기간: 2026. 6. 24. ~ 2026. 7. 15.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15일 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미래성장전략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미래성장전략과
 - 전 화: 031-6193-2725
 - 팩 스: 031-6193-3559
 - 전자메일: hkahn8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구 분: 제정

2. 제정 이유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안 제4조 ~ 제6조)
- 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의 운영 규정(안 제7조 ~ 제8조)
- 라. 시범운행지구의 성과관리 및 지원 방안 규정(안 제9조 ~ 제13조)
- 마. 자료제출 요구 권한 규정(안 제14조)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

다.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제3조, 제5조~제7조, 제9조, 제14조~제22조

7.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

8. 입법예고: 2026. 6. 30. ~ 2026. 7. 21.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없음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협의 예정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협의 예정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 예정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이행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협의 예정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협의 예정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노선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용인시의회 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자율주행 또는 여객운송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부서 실·국장 및 과장, 지능형교통체계 업무 소관부서 과장, 대중교통 업무 소관부서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 지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한다.

제9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용인시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부서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0조(성과공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공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시범운행지구 기반 구축
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용인시 또는 용인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9조 및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유상운송허가 및 한정운수면허와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미래성장전략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팀장 직위 · 성명	미래모빌리티팀장 최관수
	주무관 성명 · 전화	안현경 (6193-2725)

관계법령 발췌서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 략)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도로관리청, 시·도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도모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노선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본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 운영·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 담당국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당연직 위원: 道 자율주행자동차 업무 소관 국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

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 략)

제9조(안전운행 준수) 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중 략)

제14조(플랫폼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

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공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도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민관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제품·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해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공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 공공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위한 시범운행지구 기반 구축
2.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운영 관련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시범운행지구 내 경기도 및 시군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경기도 또는 시군의 출차·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제출)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9조제3항의 특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3항의 특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제2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출차·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17조 등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2. 제4조에 따른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에 관한 업무
3.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안전운행 검증 기준 마련 지원 업무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6조,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필요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현재 추진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2대)을 지속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현재 구축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시스템을 기능변경 없이 유지관리 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신규 지정 및 변경 등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총 필요금액	720,200	720,200	720,200	720,200	720,200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708,200	708,200	708,200	708,200	708,200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범위에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720,200	720,200	720,200	720,200	720,200	3,601,000
	운영비		708,200	708,200	708,200	708,200	708,200	3,541,000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재원조달			-	-	-	-	-	-
	일반회계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720,200	720,200	720,200	720,200	720,200	3,601,000
		지방세	720,200	720,200	720,200	720,200	720,200	3,601,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우리시 기흥구 중동 862번지 일원 한숲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용인시장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증/감	
변경	한숲근린공원	근린공원	기흥구 중동 862번지 일원	127,568	127,568	-	2002.10.28. (경고 제2002-257호)

2.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결정 내용			변경결정 사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한숲근린공원	· 총면적 : 127,568.0m ² · 기반시설 : 3,162.0m ² · 휴양시설 : 1,343.0m ² · 운동시설 : 1,862.0m ² · 교양시설 : 7,579.0m ² · 편익시설 : 377.0m ² · 녹지및기타 : 113,245.0m ²	· 총면적 : 127,568.0m ² · 기반시설 : 4,366.0m ² · 휴양시설 : 1,643.0m ² · 운동시설 : 1,779.0m ² · 교양시설 : 6,639.0m ² · 편익시설 : 403.0m ² · 녹지및기타 : 112,738.0m ²	- 증) 1,204.0m ² 증) 300.0m ² 감) 83.0m ² 감) 940.0m ² 증) 26.0m ² 감) 507.0m ²	○ 현행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031-6193-9023)에 비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내용

구분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증감	
변경	한숲 근린공원	근린 공원	기흥구 중동 862번지 일원	127,568.0	127,568.0	-	02.10.28 (경고2002-257)

2. (변경)결정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결정 내용			변경결정 사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한숲 근린공원	· 총면적 : 127,568.0㎡ · 기반시설 : 3,162.0㎡ · 휴양시설 : 1,343.0㎡ · 운동시설 : 1,862.0㎡ · 교양시설 : 7,579.0㎡ · 편익시설 : 377.0㎡ · 녹지및기타 : 113,245.0㎡	· 총면적 : 127,568.0㎡ · 기반시설 : 4,366.0㎡ · 휴양시설 : 1,643.0㎡ · 운동시설 : 1,779.0㎡ · 교양시설 : 6,639.0㎡ · 편익시설 : 403.0㎡ · 녹지및기타 : 112,738.0㎡	- 증) 1,204.0㎡ 증) 300.0㎡ 감) 83.0㎡ 감) 940.0㎡ 증) 26.0㎡ 감) 507.0㎡	○현황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시설결정 총괄조서

구분	공원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시설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변경	한숲 근린공원	127,568.0	127,568.0	-	14,323.0	14,830.0	증)507.0	11.2	11.6	증)0.4

2) 조성계획결정 총괄조서

구 분		결 정 면 적						비고
		면적(m²)			비율(%)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127,568.0	127,568.0	-	100.0	100.0	-	
시설 면적	소 계	14,323.0	14,830.0	증) 507.0	11.2	11.6	증)0.4	
	도로 및 광장	3,162.0	4,366.0	증)1,204.0	2.5	3.4	증)0.9	
	휴양시설	1,343.0	1,643.0	증) 300.0	1.1	1.3	증)0.2	
	운동시설	1,862.0	1,779.0	감) 83.0	1.5	1.4	감)0.1	
	교양시설	7,579.0	6,639.0	감) 940.0	5.9	5.2	감)0.7	
	편익시설	377.0	403.0	증) 26.0	0.3	0.3	-	
녹지 및 기타		113,245.0	112,738.0	감) 507.0	88.8	88.4	감)0.4	

3) 세부시설결정 조서

○ 근린공원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7,568.0	127,568.0		1,352.65		3,005.35	-	81	
기반 시설	소계			3,162.0	4,366.0					-	-	
	도로			3,162.0	4,314.0					-	-	
	광장	-	가-1	-	52					-	-	
조경 시설	소계			-	-					-	1	
	조형물	-	①	-	-					-	1	
휴양 시설	소계			1,343.0	1,643.0		35.19		35.19	-	46	
	휴게쉼터1	가-1	다-1	500	631					-	-	
	휴게쉼터2	가-2	다-2	326	326					-	-	
	휴게쉼터3	가-3	다-3	177	176					-	-	
	노인정	가-4	다-4	300	300					-	-	
	쉼터	-	다-5	-	210					-	-	
	데크	-	②	-	-					-	3	
	팔각정	-	③	-	-		35.19		35.19	-	1	
	육각정	-	④	-	-					-	1	
	정자	-	⑤	-	-					-	1	
	파고라	-	⑥	-	-					-	3	
	등의자	-	⑦	-	-					-	32	
	통나무의자	-	⑧	-	-					-	4	
운동 시설	소계			1,862.0	1,779.0					-	20	
	배드민턴장	나-1	-	562	-					-	-	
	농구장	나-2	라-1	1,300.0	1,300.0					-	-	
	운동공간1	나-3	라-2	-	479					-	-	
	운동공간2	-	라-3	-	-					-	-	
	야외운동기구	-	⑨	-	-					-	20	
교양 시설	소계			7,579.0	6,639.0		1,317.46		2,970.16	-	8	
	박물관	다-1	마-1	3,488.0	3,886.0		1,317.46		2,970.16	-	-	
	유아숲	다-2	마-2	4,091.0	2,753.0					-	-	
	인디언집	-	⑩	-	-					-	2	
	미끄럼틀	-	⑪	-	-					-	1	
	트램펄린	-	⑫	-	-					-	1	
	줄당기기	-	⑬	-	-					-	2	
	유아체험 놀이시설	-	⑭	-	-					-	2	
편의 시설	소계			377	403					-	4	
	육교	라-1	바-1	377	377					-	-	
	세족장	-	나-3	-	26					-	-	
	에어컨	-	⑮	-	-					-	1	
	신발장	-	⑯	-	-					-	3	
관리 시설	소계			-	-						2	
	공원안내판	-	⑰	-	-					-	1	
	안내판	-	⑱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13,245.0	112,738.0							
	녹지			113,245.0	112,738.0							

4) 시설결정 조서(도로)

○ 기정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1,543.0	3,162.0	-	-	
기정	산책로		1	2.0	212.0	424.0	외부도로	가-1	
			2	2.0	45.0	90.0	라-1	산책로1	
			3	2.0	170.0	340.0	가-2	산책로1	
			4	3.0	76.0	228.0	산책로3	가-1	
			5	2.0	534.0	1,068.0	외부도로	가-1	
			6	2.0	296.0	592.0	외부도로	산책로5	
			7	2.0	116.0	232.0	가-3	산책로5	
			8	2.0	94.0	188.0	외부도로	나-1	

○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1,972.5	4,314.0	-	-	
변경	산책로		1	2.5	177.0	413.0	외부도로	다-1	
			2	2.0	44.5	89.0	바-1	산책로1	
			3	2.0	169.5	339.0	다-2	산책로1	
			4	3.0	45.0	135.0	산책로3	다-1	
			5	3.0	307.0	921.0	나-2	산책로6	
			6	2.0	361.0	722.0	외부도로	다-1	
			7	2.5	112.0	280.0	다-3	산책로5	
			8	2.0	36.5	73.0	외부도로	산책로9	
			9	1.5	69.3	104.0	외부도로	산책로21	
			10	2.0	26.5	53.0	마-1	산책로21	
			11	2.0	9.0	18.0	가-1	산책로21	
			12	2.0	17.0	34.0	산책로5	마-1	
			13	2.5	53.6	134.0	산책로5	마-1	
			14	2.0	35.5	71.0	산책로21	마-1	
			15	2.0	12.5	25.0	산책로9	다-5	
			16	1.5	160.6	241.0	산책로14	외부도로	
			17	1.2	15.8	19.0	산책로16	마-1	
			18	2.0	44.5	89.0	마-1	산책로7	
			19	2.0	8.5	17.0	산책로7	마-1	
			20	2.0	2.0	4.0	산책로7	마-1	
			21	2.5	32.4	81.0	산책로9	산책로5	
			22	1.8	213.7	419.0	산책로11	산책로7	
			23	1.8	19.1	33.0	산책로11	산책로15	

4. 관련법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서

구 분	기 준	검 토	비 고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별표4)	1. 생활권 공원 가. 근린공원(3만~10만제곱미터) - 공원시설 : 100분의 40이하	·공원의 시설면적 : 14,830.0㎡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 : 11.6%	적합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우리시 기흥구 보라동 604번지 일원 보라택지개발 지구 내 건강마당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용인시장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건강마당 근린공원	근린공원	기흥구 보라동 604번지 일원	45,621.2	45,621.2	-	2003.01.07. (경고 제2003-301호)

2.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결정 내용			변경결정 사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건강마당 근린공원	· 총면적 : 45,621.2㎡ · 기반시설 : 2,460.0㎡ · 휴양시설 : 1,719.5㎡ · 운동시설 : 2,078.0㎡ · 편의시설 : 146.7㎡ · 녹지및기타 : 39,217.0㎡	· 총면적 : 45,621.2㎡ · 기반시설 : 1,571.0㎡ · 휴양시설 : 2,002.0㎡ · 운동시설 : 2,345.0㎡ · 편의시설 : 167.0㎡ · 녹지및기타 : 39,536.2㎡	- 감)889.0㎡ 증)282.5㎡ 증)267.0㎡ 증)20.3㎡ 증)319.2㎡	○ 현행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031-6193-9023)에 비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우리시 기흥구 서천동 802번지 일원 남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용인시장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증/감	
변경	남산근린공원	근린공원	기흥구 서천동 802번지 일원	23,109.7	23,109.7	-	2005.01.03. (경고 제2005-422호)

2.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결정 내용			변경결정 사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남산근린공원	· 총면적 : 23,109.7㎡ · 기반시설 : 4,558.0㎡ · 조경시설 : 1,709.0㎡ · 휴양시설 : 327.0㎡ · 운동시설 : 1,767.0㎡ · 편익시설 : 423.0㎡ · 관리시설 : 56.0㎡ · 녹지및기타 : 14,269.7㎡	· 총면적 : 23,109.7㎡ · 기반시설 : 4,564.0㎡ · 조경시설 : 1,709.0㎡ · 휴양시설 : 333.0㎡ · 운동시설 : 1,767.0㎡ · 편익시설 : 426.0㎡ · 관리시설 : 56.0㎡ · 녹지및기타 : 14,254.7㎡	- 증) 6.0㎡ - 증) 6.0㎡ - 증) 3.0㎡ - 감) 15.0㎡	○ 현행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031-6193-9023)에 비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내용

구분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증감	
변경	남산 근린공원	근린 공원	기흥구 서천동 802, 농서동 425, 431번지 일원	23,109.7	23,109.7	-	05.01.03 (경고2005-422)

2. (변경)결정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결정 내용			변경결정 사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남산 근린공원	· 총면적 : 23,109.7㎡ · 기반시설 : 4,558.0㎡ · 조경시설 : 1,709.0㎡ · 휴양시설 : 327.0㎡ · 운동시설 : 1,767.0㎡ · 편익시설 : 423.0㎡ · 관리시설 : 56.0㎡ · 녹지및기타 : 14,269.7㎡	· 총면적 : 23,109.7㎡ · 기반시설 : 4,564.0㎡ · 조경시설 : 1,709.0㎡ · 휴양시설 : 333.0㎡ · 운동시설 : 1,767.0㎡ · 편익시설 : 426.0㎡ · 관리시설 : 56.0㎡ · 녹지및기타 : 14,254.7㎡	- 증) 6.0㎡ - 증) 6.0㎡ - 증) 3.0㎡ - 감) 15.0㎡	○현행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시설결정 총괄조서

구분	공원명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시설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변경	남산 근린공원	23,109.7	23,109.7	-	8,840.0	8,855.0	증)15.0	38.1	38.1	-

2) 조성계획결정 총괄조서

구 분		결 정 면 적						비고
		면적(m²)			비율(%)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23,109.7	23,109.7	-	100.0	100.0	-	
시 설 면 적	소 계	8,840.0	8,855.0	증)15.0	38.1	38.1	-	
	도로 및 광장	4,558.0	4,564.0	증) 6.0	19.7	19.7	-	
	조경시설	1,709.0	1,709.0	-	7.4	7.4	-	
	휴양시설	327.0	333.0	증) 6.0	1.4	1.4	-	
	운동시설	1,767.0	1,767.0	-	7.6	7.6	-	
	편익시설	423.0	426.0	증) 3.0	1.8	1.8	-	
	관리시설	56.0	56.0	-	0.2	0.2	-	
	녹지 및 기타	14,269.7	14,254.7	감)15.0	61.9	61.9	-	

3) 세부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구조		규모		건축면적(㎡)				공작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3,109.7	23,109.7					157.89	409.89	141.43	393.43	65	67	
기 반 시 설	소계					4,558.0	4,564.0									-	-	
	도로					2,456.0	2,462.0									-	-	
	광장	가-1	가-1			103.0	103.0									-	-	
	진입광장1	가-2	가-2			592.0	592.0									-	-	
	진입광장2	가-3	가-3			459.0	459.0									-	-	
	분수광장	가-4	가-4			948.0	948.0									-	-	
조 경 시 설	소계					1,709.0	1,709.0									24	24	
	계류1	나-1	나-1			469.0	469.0									-	-	
	계류2	나-2	나-2			200.0	200.0									-	-	
	계류3	나-3	나-3			348.0	348.0									-	-	
	계류4	나-4	나-4			187.0	187.0									-	-	
	석축화단1	나-5	나-5			283.0	283.0									-	-	
	석축화단2	나-6	나-6			222.0	222.0									-	-	
	장미아치	①	①			-	-									17	17	
	플랜터	②	②			-	-									4	4	
	조형벽A	③	③			-	-									1	1	
	조형벽B	④	④			-	-									1	1	
바닥분수	⑤	⑤			-	-									1	1		
휴 양 시 설	소계					327.0	333.0					-	14.00	-	14.00	29	28	
	쉼터1	다-1	다-1			129.0	129.0									-	-	
	쉼터2	다-2	다-2			122.0	122.0									-	-	
	쉼터3	다-3	다-3			76.0	68.0									-	-	
	휴게실	-	다-4			-	14.0					-	14.00	-	14.00	-	-	
	파고라A	⑥	⑥			-	-									4	3	
	파고라B	⑦	⑦			-	-									2	2	
	평의자	⑧	⑧			-	-									14	14	
	등의자	⑨	⑨			-	-									9	9	
운 동 시 설	소계					1,767.0	1,767.0					-	252.00	-	252.00	6	7	
	배드민턴장	라-1	라-1			249.0	249.0									-	-	
	다목적구장	라-2	라-2			252.0	252.0									-	-	
	테니스장	라-3	라-3			1,204.0	1,204.0									-	-	
	운동공간1	라-4	라-4			19.0	19.0									-	-	
	운동공간2	라-5	라-5			20.0	20.0									-	-	
	운동공간3	라-6	라-6			23.0	23.0									-	-	
	체육단련시설	⑩	⑩			-	-									6	6	
막구조물	-	⑪			-	-					-	252.00	-	252.00	-	1		
편 익 시 설	소계					423.0	426.0					157.89	160.89	141.43	144.43	-	-	
	주차장	마-1	마-1			214.0	214.0									-	-	
	화장실	마-2	마-2			200.0	200.0					148.89	148.89	132.43	132.43	-	-	
	창고	마-3	마-3			9.0	9.0					9.00	9.00	9.00	9.00	-	-	
	물품보관함	-	마-4			-	3.0					-	3.00	-	3.00	-	-	
관 리 시 설	소계					56.0	56.0									6	6	
	기계실1	바-1	바-1			28.0	28.0									-	-	
	기계실2	바-2	바-2			28.0	28.0									-	-	
	수목보호홀 덮개	⑪	⑫			-	-									6	6	
녹 지 및 기 타	소계					14,269.7	14,254.7									-	-	
	녹지					14,269.7	14,254.7									-	-	

4) 시설결정 조서(도로)

○ 기정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793.3	2,456.0	-	-	
기정	소로	3	1	6.5	13.1	86.0	동쪽경계	가-4	진입로
			2	7.5	51.2	384.0	서쪽경계	가-4	
			3	1.5	17.2	26.0	서쪽경계	소로3-6	
			4	4.0	94.2	377.0	가-2	가-4	연결로
			5	2.0	36.5	73.0	소로3-4	소로3-11	
			6	2.0	242.0	484.0	가-2	가-3	
			7	4.0	116.0	460.0	가-4	가-3	
			8	1.5	17.2	26.0	소로3-3	소로3-7	
			9	5.0	14.6	73.0	남쪽경계	육교	
			10	1.0	45.0	45.0	소로3-4	소로3-2	
			11	1.5	23.3	35.0	소로3-4	소로3-6	
			12	1.5	19.3	29.0	소로3-6	나-1	
			13	0.8	7.2	58.0	라-1	소로3-7	
			14	4.5	14.0	63.0	가-3	육교	
			15	1.5	2.6	4.0	소로3-6	바-1	
			16	1.5	4.6	7.0	가-4	바-2	
			17	3.0	75.3	226.0	라-1	라-1	순환로

○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797.3	2,462.0	-	-	
변경	소로	3	1	6.5	13.1	86.0	동쪽경계	가-4	진입로
			2	7.5	51.2	384.0	서쪽경계	가-4	
			3	1.5	17.2	26.0	서쪽경계	소로3-6	
			4	4.0	94.2	377.0	가-2	가-4	연결로
			5	2.0	36.5	73.0	소로3-4	소로3-11	
			6	2.0	242.0	484.0	가-2	가-3	
			7	4.0	116.0	460.0	가-4	가-3	
			8	1.5	17.2	26.0	소로3-3	소로3-7	
			9	5.0	14.6	73.0	남쪽경계	육교	
			10	1.0	45.0	45.0	소로3-4	소로3-2	
			11	1.5	23.3	35.0	소로3-4	소로3-6	
			12	1.5	19.3	29.0	소로3-6	나-1	
			13	0.8	7.2	58.0	라-1	소로3-7	
			14	4.5	14.0	63.0	가-3	육교	
			15	1.5	2.6	4.0	소로3-6	바-1	
			16	1.5	8.6	13.0	소로3-1	바-2	
			17	3.0	75.3	226.0	라-1	라-1	순환로

4. 관련법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서

구 분	기 준	검 토	비 고
-----	-----	-----	-----

구 분	기 준	검 토	비 고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별표4)	1. 생활권 공원 가. 근린공원(3만~10만제곱미터) - 공원시설 : 100분의 40이하	·공원의 시설면적 : 8,855.0㎡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 : 38.1%	적합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806번지 역북지구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파출소)을 폐지하고, 준주거시설용지로의 도시관리계획(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사항[용인시 고시 제 2026-383호(2026.06.26.)]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정정 사항 : 주차장 결정조서 상 변경 내용 삭제(오기정정)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미래도시과(031-6193-2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 생략(용인시청 미래도시과 비치)

2026. 6. 30.

용 인 시 장

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주거지역	합계	417,284.8	100.0	
	소 계	348,152.8	83.4	
	일반주거지역	273,935.5	65.6	
	제1종일반주거지역	41,116.6	9.9	
	제3종일반주거지역	232,818.9	55.8	
	준주거지역	74,217.3	17.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9,132.0	16.6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명칭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95	역북 도시개발 사업구역	용인시 역북동 738번지	417,284.8	10.03.18.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	35~44 (5~9)	주 간선	24,490 (345)	중1-87호 (대3-16)	추계리 도시지역계 (대3-14)	일반	75.5.6 (경고178)	()는 지구내
기정	대로	3	14	25~22 (4~8)	주 간선	1,300 (820)	대1-5 (대1-5)	명지대학교 (역북동 570-6)	일반	74.5.4 (경고135)	()는 지구내
기정	대로	3	16	25~29 (1~7)	보조 간선	740 (684)	대1-5 (대1-5)	제14호 교통광장 (역북동 557-100)	일반	03.1.22 (경고208-4)	()는 지구내
기정	중로	1	1	21	보조 간선	490	역북동 738	역북동738	일반		
기정	중로	1	2	20~23	집산	178	역북동 739	역북동 739	일반		
기정	중로	2	1	19~25	집산	387	역북동	역북동	일반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735	735			
기정	중로	2	2	15	집산	244	역북동 743	역북동 743	일반		
기정	중로	2	3	15	집산	329	역북동 761	역북동 761	일반		
기정	중로	3	1	12	국지	217	역북동 751	역북동 751	일반		
기정	중로	3	2	12	국지	223	역북동 758	역북동 758	일반		
기정	중로	3	3	12~15	집산	188	역북동 742	역북동 742	일반		
기정	중로	3	4	12~15	집산	182	역북동 741	역북동 741	일반		
기정	소로	1	1	10	국지	26	역북동 751	역북동 751	일반		
기정	소로	1	2	10	특수	17	역북동 751-2	역북동 751-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	24	역북동 758	역북동 758	일반		
기정	소로	1	4	10	특수	19	역북동 758-1	역북동 758-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5	13	국지	107	역북동 791-3	역북동 791-3	일반		
기정	소로	1	6	10	국지	229	역북동 766	역북동 766	일반		
기정	소로	2	1	8	특수	68	역북동 757-1	역북동 757-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2	8	특수	84	역북동 757-1	역북동 757-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3	8	특수	52	역북동 757-1	역북동 757-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	424	역북동 755	역북동 755	일반		
기정	소로	2	5	8	국지	18	역북동 762-6	역북동 762-6	일반		
기정	소로	2	6	8	국지	65	역북동 764	역북동 764	일반		
기정	소로	2	7	8	국지	125	역북동 769	역북동 769	일반		
기정	소로	2	8	8	국지	125	역북동 772	역북동 772	일반		
기정	소로	2	9	6~9	특수	20	역북동 778-3	역북동 778-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10	8	국지	48	역북동 794-3	역북동 794-3	일반		
기정	소로	2	11	8	국지	49	역북동 794-3	역북동 794-3	일반		
기정	소로	2	12	8	국지	38	역북동 794-3	역북동 794-3	일반		
기정	소로	3	1	6	특수	144	역북동 802-1	역북동 802-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	6	특수	42	역북동 751-1	역북동 751-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	6	특수	68	역북동 746-1	역북동 746-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4	6	특수	34	역북동 749-1	역북동 749-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	6	특수	35	역북동 752-1	역북동 752-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6	4	특수	18	역북동	역북동	보행자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762-7	762-7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7	4	특수	36	역북동 763-8	역북동 763-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	4	특수	36	역북동 765-8	역북동 765-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	4	특수	22	역북동 776-6	역북동 776-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0	4	특수	36	역북동 768-8	역북동 768-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1	4	특수	36	역북동 771-8	역북동 771-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2	4	특수	22	역북동 777-6	역북동 777-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3	4	특수	26	역북동 773-4	역북동 773-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4	2~3	특수	42	역북동 778-4	역북동 778-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5	3	특수	85	역북동 777-7	역북동 777-7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6	3	특수	106	역북동 776-7	역북동 776-7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7	3	특수	29	역북동 760-1	역북동 760-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8	3	특수	52	역북동 759-2	역북동 759-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9	4	특수	30	역북동 753-3	역북동 753-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0	4	특수	29	역북동 750-3	역북동 750-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1	4	특수	77	역북동 748-3	역북동 748-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2	4	특수	94	역북동 745-1	역북동 745-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3	4	특수	131	역북동 779-1	역북동 779-1	보행자 전용도로		

2)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계			—	7,426.4 (2,635.4)		7,426.4 (2,635.4)	—	()지구 면적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역북동 747	699.1	—	699.1		
기정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역북동 757	1,936.3	—	1,936.3		
기정	3	주차장	노외주차장	역북동 807	4,791.0		4,791.0	—	문화공원 하부중복 결정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광장 : 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계			—	2,877.9	—	2,877.9	—	—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역북동 760-2	1,892.0	—	1,892.0	—	—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역북동 740	985.9	—	985.9	—	—

2)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계			—	70,089.7 (15,536.9)	-	70,089.7 (15,536.9)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삼가동, 남동 일원 (중로1-141호선 양측)	56,969 (7,456.1)	-	56,969 (7,456.1)		()는 지구내 면적
기정	57	녹지	완충녹지	역북동일원 (대로3-16호선 양측)	10,679 (5,639.1)	-	10,679 (5,639.1)		()는 지구내 면적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역북동529-7번지 일원 (대로1-5호선변)	2,441.7	-	2,441.7		

3)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계			5개소	71,852.7	－	71,852.7		
소계	근린공원			2개소	44,406.2	－	44,406.2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역북동 810	14,405.4	－	14,405.4		유수지 중복결정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역북동 805	30,000.8	－	30,000.8		
소계	문화공원			1개소	21,589.7	－	21,589.7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역북동 807	21,589.7	－	21,589.7		문화공원하부 주차장중복결정 면적포함 (면적변경없음)
소계	어린이공원			1개소	3,736.7	－	3,736.7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역북동 736-2	3,736.7	－	3,736.7		
소계	소공원			1개소	2,120.1	－	2,120.1		
기정	1	공원	소공원	역북동 801	2,120.1	－	2,120.1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1)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공공청사			—	4,049.2	감)921.0	3,128.2		—
기정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역북동 744	3,128.2	—	3,128.2		—
폐지	2	공공청사	파출소	역북동 806	921.0	감)921.0	—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 행정환경의 변화로 추가적인 공공청사 수요가 없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폐지하고자 함

2)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초등학교			—	12,411.6	—	12,411.6		—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역북동 737	12,411.6	—	12,411.6		—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우수지 : 변경없음

-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저류시설			—	9,629	—	9,629		—
기정	1	우수지	저류시설	역북동 810	9,629	—	9,629		근린공원 중복결정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합계		계			24,484.0	—
기정		소계			860.0	
기정	단①	단1	-1	용인시 역북동 791	292.0	
기정	단①	단1	-2	용인시 역북동 791-1	290.0	
기정	단①	단1	-3	용인시 역북동 791-2	278.0	
		소계	—		1,580	
기정	단②	단2	-1	용인시 역북동 762	276	
기정	단②	단2	-2	용인시 역북동 762-1	276	
기정	단②	단2	-3	용인시 역북동 762-2	254	
기정	단②	단2	-4	용인시 역북동 762-3	254	
기정	단②	단2	-5	용인시 역북동 762-4	253	
기정	단②	단2	-6	용인시 역북동 762-5	267	
		소계			2,192.2	
기정	단③	단3	-1	용인시 역북동 763	276.1	
기정	단③	단3	-2	용인시 역북동 763-1	276.4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기정	단③	단3	-3	용인시 역북동 763-2	275.3	
기정	단③	단3	-4	용인시 역북동 763-3	269.5	
기정	단③	단3	-5	용인시 역북동 763-4	269.2	
기정	단③	단3	-6	용인시 역북동 763-5	275.2	
기정	단③	단3	-7	용인시 역북동 763-6	275.2	
기정	단③	단3	-8	용인시 역북동 763-7	275.3	
	소계				2,167.9	
기정	단④	단4	-1	용인시 역북동 765	273.0	
기정	단④	단4	-2	용인시 역북동 765-1	273.3	
기정	단④	단4	-3	용인시 역북동 765-2	273.3	
기정	단④	단4	-4	용인시 역북동 765-3	266.3	
기정	단④	단4	-5	용인시 역북동 765-4	265.3	
기정	단④	단4	-6	용인시 역북동 765-5	272.3	
기정	단④	단4	-7	용인시 역북동 765-6	272.4	
기정	단④	단4	-8	용인시 역북동 765-7	272.0	
	소계				1,907.1	
기정	단⑤	단5	-1	용인시 역북동 767	291.0	
기정	단⑤	단5	-2	용인시 역북동 767-1	272.0	
기정	단⑤	단5	-3	용인시 역북동 767-2	273.0	
기정	단⑤	단5	-4	용인시 역북동 767-3	271.0	
기정	단⑤	단5	-5	용인시 역북동 767-4	271.0	
기정	단⑤	단5	-6	용인시 역북동 767-5	264.0	
기정	단⑤	단5	-7	용인시 역북동 767-6	265.1	
	소계				2,160.3	
기정	단⑥	단6	-1	용인시 역북동 768	272.0	
기정	단⑥	단6	-2	용인시 역북동 768-1	272.5	
기정	단⑥	단6	-3	용인시 역북동 768-2	272.6	
기정	단⑥	단6	-4	용인시 역북동 768-3	266.1	
기정	단⑥	단6	-5	용인시 역북동 768-4	265.0	
기정	단⑥	단6	-6	용인시 역북동 768-5	270.4	
기정	단⑥	단6	-7	용인시 역북동 768-6	271.6	
기정	단⑥	단6	-8	용인시 역북동 768-7	270.1	
	소계				2,163.5	
기정	단⑦	단7	-1	용인시 역북동 770	266.3	
기정	단⑦	단7	-2	용인시 역북동 770-1	273.2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기정	단㉔	단7	-3	용인시 역북동 770-2	273.0	
기정	단㉔	단7	-4	용인시 역북동 770-3	273.2	
기정	단㉔	단7	-5	용인시 역북동 770-4	271.2	
기정	단㉔	단7	-6	용인시 역북동 770-5	271.1	
기정	단㉔	단7	-7	용인시 역북동 770-6	271.3	
기정	단㉔	단7	-8	용인시 역북동 770-7	264.2	
	소계				2,156.2	
기정	단㉕	단8	-1	용인시 역북동 711	271.0	
기정	단㉕	단8	-2	용인시 역북동 711-1	272.0	
기정	단㉕	단8	-3	용인시 역북동 711-2	272.0	
기정	단㉕	단8	-4	용인시 역북동 711-3	267.0	
기정	단㉕	단8	-5	용인시 역북동 711-4	265.0	
기정	단㉕	단8	-6	용인시 역북동 711-5	270.0	
기정	단㉕	단8	-7	용인시 역북동 711-6	270.0	
기정	단㉕	단8	-8	용인시 역북동 711-7	269.2	
	소계				1,247.0	
기정	단㉖	단9	-1	용인시 역북동 773	286.0	
기정	단㉖	단9	-2	용인시 역북동 773-1	286.0	
기정	단㉖	단9	-3	용인시 역북동 773-2	320.0	
기정	단㉖	단9	-4	용인시 역북동 773-3	355.0	
	소계				1,899.3	
기정	단㉗	단10	-1	용인시 역북동 774	212.6	
기정	단㉗	단10	-2	용인시 역북동 774-1	212.6	
기정	단㉗	단10	-3	용인시 역북동 774-2	252.7	
기정	단㉗	단10	-4	용인시 역북동 774-3	246.7	
기정	단㉗	단10	-5	용인시 역북동 774-4	275.7	
기정	단㉗	단10	-6	용인시 역북동 774-5	244.6	
기정	단㉗	단10	-7	용인시 역북동 774-6	246.6	
기정	단㉗	단10	-8	용인시 역북동 774-7	207.8	
	소계				1,553.0	
기정	단㉘	단11	-1	용인시 역북동 766	259.0	
기정	단㉘	단11	-2	용인시 역북동 766-1	258.0	
기정	단㉘	단11	-3	용인시 역북동 766-2	259.0	
기정	단㉘	단11	-4	용인시 역북동 766-3	259.0	
기정	단㉘	단11	-5	용인시 역북동 766-4	259.0	
기정	단㉘	단11	-6	용인시 역북동 766-5	259.0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소계				1,583.7	
기정	단⑫	단12	-1	용인시 역북동 777	262.7	
기정	단⑫	단12	-2	용인시 역북동 777-1	264.0	
기정	단⑫	단12	-3	용인시 역북동 777-2	263.8	
기정	단⑫	단12	-4	용인시 역북동 777-3	264.7	
기정	단⑫	단12	-5	용인시 역북동 777-4	264.8	
기정	단⑫	단12	-6	용인시 역북동 777-5	263.7	
	소계				791.0	
기정	단⑬	단13	-1	용인시 역북동 778	264.0	
기정	단⑬	단13	-2	용인시 역북동 778-1	264.0	
기정	단⑬	단13	-3	용인시 역북동 778-2	263.0	
	소계				924.4	
기정	단⑭	단14	-1	용인시 역북동 793	229.6	
기정	단⑭	단14	-2	용인시 역북동 793-1	229.6	
기정	단⑭	단14	-3	용인시 역북동 793-3	232.6	
기정	단⑭	단14	-4	용인시 역북동 793-2	232.6	
	소계				783.3	
기정	단⑮	단15	-1	용인시 역북동 794	277.3	
기정	단⑮	단15	-2	용인시 역북동 794-1	256.0	
기정	단⑮	단15	-3	용인시 역북동 794-2	250.0	
	소계				515.1	
기정	단⑯	단16	-1	용인시 역북동 792	257.1	
기정	단⑯	단16	-2	용인시 역북동 792-1	258.0	

2) 준주거시설용지 : 변경

- 준주거시설용지(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계			—	—	26,321.4	—
	소계				1,872.1	
기정	준①	준1	-1	용인시 역북동 747-1	936.1	
기정	준①	준1	-2	용인시 역북동 747-2	936.0	
	소계				2,929.1	
기정	준②	준2	-1	용인시 역북동 748	976.0	
기정	준②	준2	-2	용인시 역북동 748-1	976.1	
기정	준②	준2	-3	용인시 역북동 748-2	977.0	
	소계				1,181.7	
기정	준③	준3	-1	용인시 역북동 749	1,181.7	
	소계				3,035.7	
기정	준④	준4	-1	용인시 역북동 750	995.1	
기정	준④	준4	-2	용인시 역북동 750-1	995.2	
기정	준④	준4	-3	용인시 역북동 750-2	1,045.4	
	소계				1,268.9	
기정	준⑤	준5	-1	용인시 역북동 752	1,268.9	
	소계				3,128.2	
기정	준⑥	준6	-1	용인시 역북동 753	1,040.0	
기정	준⑥	준6	-2	용인시 역북동 753-1	1,039.1	
기정	준⑥	준6	-3	용인시 역북동 753-2	1,049.1	
	소계				2,530.1	
기정	준⑦	준7	-1	용인시 역북동 754	843.4	
기정	준⑦	준7	-2	용인시 역북동 754-1	843.4	
기정	준⑦	준7	-3	용인시 역북동 754-2	843.3	
	소계				2,552.4	
기정	준⑧	준8	-1	용인시 역북동 756	880.1	
기정	준⑧	준8	-2	용인시 역북동 756-1	841.1	
기정	준⑧	준8	-3	용인시 역북동 756-2	831.2	
	소계				2,049.2	
기정	준⑨	준9	-1	용인시 역북동 759	1,025.2	
기정	준⑨	준9	-2	용인시 역북동 759-1	1,024.0	
	소계				2,018.5	
기정	준⑩	준10	-1	용인시 역북동 755	1,009.2	
기정	준⑩	준10	-2	용인시 역북동 755-1	1,009.3	
	소계				1,285.1	
기정	준⑪	준11	-1	용인시 역북동 760	1,285.1	
	소계				1,549.4	
기정	준⑫	준12	-1	용인시 역북동 746	1,549.4	
	소 계				921.0	
신설	준⑬	준13	-1	용인시 역북동 806	921.0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공동주택시설용지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계			4개소	173,778.1	
기정	ABL	ABL	용인시 역북동 734	34,124.9	
기정	BBL	BBL	용인시 역북동 809	55,492.0	
기정	CBL	CBL	용인시 역북동 736	57,102.5	
기정	DBL	DBL	용인시 역북동 808	27,058.7	

4) 학교 : 변경없음

- 학교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계			1개소	12,411.6	
기정	초①	초1	용인시 역북동 737	12,411.6	

5)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계			1개소	3,128.2	
기정	공①	공1	용인시 역북동 744	3,128.2	
기정	공②	공2	용인시 역북동 806	921.0	공공청사(파출소) → 준주거용지
폐지	—	—	—	—	

6)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계			2개소	2,635.4	
기정	주①	주1	용인시 역북동 747	699.1	
기정	주②	주2	용인시 역북동 757	1,936.3	

7) 복합용지 : 변경없음

•복합용지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계			2개소	15,603.5	
기정	복①	복1	용인시 역북동 802	11,116.0	
기정	복②	복2	용인시 역북동 745	4,487.5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단독주택 : 기정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단1~ 단16	-	용도	허용 용도	단독 ▪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 ▪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필지당 10가구 이내에 한함)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전체 연면적의 40%초과금지)	
				권장용도	▪ 단독주택	
				불허 용도	단독 ▪ 허용용도 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탍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유기장,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업소, 고시원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4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도로변 및 보행자 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치		▪ 1m(대지안의 공지, 북측도로변(단1,단2,단6), 북서측 도로변(단5), 남측도로변(단4), 서측도로변(단7, 단9), 동측도로변(단1, 단14, 단15))	
			형태		▪ 경사지붕(동서방향의 용마루 권장) ▪ 지붕구배 3/10이상	
색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공동주택 : 기정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ABL	-	용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6m(북측 완충녹지변 21m, 서측 완충녹지변 20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배치	차폐조경(북측 완충녹지변) 15층, 20층 이하배치구간 (북측 완충녹지변) 직각 배치구간(서측 완충녹지변) 남북방향 통경축 설정 쌈지형공지(서측 완충녹지변, 보행자 전용도로변) 2m(대지안의 공지, 남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태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 (50m)로 권장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권장	
			색채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BBL	-	용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최저층수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완충녹지변 서측17m, 남측 9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배치	20층 이하배치 구간 (남측 완충녹지변) 직각 배치구간(서측 완충녹지변) 쌈지형공지(공원변)	결정도 참고
			형태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 (50m)로 권장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권장	
			색채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CBL	-	용도	▪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5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서측 완충녹지변 14m, 남측도로변 16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배치	▪ 남북방향 통경축 설정 ▪ 직각배치구간(완충녹지변) ▪ 차폐조경(학교연접부) ▪ 2m(대지안의 공지, 남·북측도로변) ▪ 1m(대지안의 공지, 동측도로변) ▪ 쌈지형 공지(서측완충녹지변)	결정도 참고
			형태	▪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 (50m)로 권장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권장	
			색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DBL	-	용도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배치	▪ 15층, 20층 이하배치구간 (남측 완충녹지변) ▪ 쌈지형공지(도로 각각부)	결정도 참고
			형태	▪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 (50m)로 권장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권장	
			색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3) 준주거시설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준1~준12	-	용도	허용용도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종교집회장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0층이하	
			최저층수	3층이상	
		건축선	건축한계선	1m(도로변 및 보행자 도로변) 2m(폭21m 도로변)	
			벽면지정선	1m(보행자도로변)	
		배치		1m(대지안의 공지, 도로변(준~5준11), 남·서측도로변(준3), 남측도로변(준4))	
		형태		1층벽면 투시형벽면 권장 - 벽면녹화, 옥화녹화 권장	
		색채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준1~ 준13	-	용도	허용용도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종교집회장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0층이하	
			최저층수	3층이상	
		건축선	건축한계선	1m(도로변 및 보행자 도로변) 2m(폭21m 도로변)	
			벽면지정선	1m(보행자도로변)	
		배치		1m(대지안의 공지, 도로변(준~5준11), 남·서측도로변(준3), 남측도로변(준4))	
		형태		1층벽면 투시형벽면 권장 - 벽면녹화, 옥화녹화 권장	
		색채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4) 복합시설용지 : 변경없음

- 복합시설용지 : 기정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복1~ 복2	-	용도	허용용도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도서관,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건폐율		▪ 복합1 : 70% 이하, 복합2 : 70% 이하
			용적률		▪ 복합1 : 275% 이하, 복합2 : 4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복합1 : 20층 이하 ▪ 복합2 : 10층 이하	
				최저층수	
			건축선	건축한계선 ▪ 복합1 : 3m(인접대지 경계) ▪ 복합2 : 2m(인접대지 경계)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배치	▪ 복합1 : 3m(대지안의 공지, 남측도로변), 쌈지형공지(도로가각부) ▪ 복합2 : 1m(대지안의 공지, 서측도로변), 쌈지형공지(도로가각부)	결정도 참고
			형태	▪ 벽면녹화, 옥상녹화 권장, 교육도시이미지 부각할수 있는 디자인 권장	
			색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5) 학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학교시설용지 : 기정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초1	-	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에 의한 학교(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최저층수	
			건축선	건축한계선 ▪ 3~6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배치	▪ 3m(대지안의 공지, 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지붕, 옥상층 조형적 디자인	
			색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6) 공공청사시설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1 공2	-	용도	▪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공1 : 10층이하	
			▪ 공2 : 5층이하	
		건축선	▪ 2m(공1), 1m(공2)	결정도 참고
			▪ 벽면지정선	
		배치	▪ 쌈지형공지(공1 도로가각부) ▪ 2m(대지안의 공지, 북측도로변(공1)) ▪ 1m(대지안의 공지, 서측도로변(공1))	결정도 참고
		형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1	-	용도	▪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10층이하	
			▪	
		건축선	▪ 2m	결정도 참고
			▪ 벽면지정선	
		배치	▪ 쌈지형공지(공1 도로가각부) ▪ 2m(대지안의 공지, 북측도로변(공1)) ▪ 1m(대지안의 공지, 서측도로변(공1))	결정도 참고
		형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7)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주차장시설용지 : 기정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1 주2	-	용도	-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장외 용도중 옥외 골프장 불허) - 주차자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계획시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3층 이하에만 허용 (옥외골프연습장 불허) -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은 전체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건폐율	- 주1 : 80% - 주2 : 80%		
			용적률	- 주1 : 640% - 주2 : 800%		
			높이	최고층수	- 주1 : 8층이하 - 주2 : 10층이하	
				최저층수		
			건축선	건축한계선	1m(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1m(보행자도로변)	결정도 참고
			배치	1m(대지안의 공지, 도로변(주2))		
			형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채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다.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내용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입불허구간지정 - 차량 진입권장구간 지정 - 간선도로변에서 차량 진출입을 원칙으로 제한 2개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가능	결정도 참고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도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삼지형 공지(권장) 설치 - 차폐조경 및 대지안의 공지 설치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계획(11차 변경) 승인 고시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7번지 일원의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계획(11차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6. 06. 30.

용 인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7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56,197㎡

(변경) 55,967.2㎡ 감) 229.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가. 실수요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지역의 개발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 조성

나.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체계적·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가. 시행자 : (기정) (주)에코니티 대표이사 장문석 (대표시행자)

(주)테 스 대표이사 주승일 이재호

(주)피 티 씨 대표이사 차경천 박종기

(변경) (주)에코니티 대표이사 장문석 (대표시행자)

(주)테 스 대표이사 주재영 이재호

(주)피 티 씨 대표이사 차경천 박종기

나. 주 소 : (주)에코니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9 (주)테

스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피 티 씨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9년 7월 1일 ~ 2026년 06월 30일

(변경) 2019년 7월 1일 ~ 2027년 06월 30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가목)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유치업종(업종코드)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46,614	감)212.3	46,401.7	1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46,614	감)212.3	46,401.7	100.0	

주)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개정)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 코드임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56,197	감)229.8	55,967.2	100.0	
산업시설용지		46,614	감)212.3	46,401.7	82.9	
지원시설용지		1,534	감)2.6	1,531.4	2.7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8,049	감)14.9	8,034.1	14.4	
	녹 지	1,940	감)7.3	1,932.7	3.5	완충녹지(1)
	공 원	927	증)0.9	927.9	1.7	소공원(1)
	도 로	4,814	감)6.9	4,807.1	8.6	중로2류(1), 소로3류(1)
	주 차 장	368	감)1.6	366.4	0.6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 (변경)

- 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산업단지 내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개소를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2개소				-	297	-	-	-	-	-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282	제일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제일일반산단 지구계	일반 도로	-	2019.7.1. (용고345)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282	제일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제일일반산단 지구계	일반 도로	-	2019.7.1. (용고345)	면적 변경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5	제일일반산단 지원시설용지	중로2-1	일반 도로	-	2019.7.1. (용고345)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5	제일일반산단 지원시설용지	중로2-1	일반 도로	-	2019.7.1. (용고345)	면적 변경

2) 주차장 (변경)

- 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주차수요 수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원시설용지와 연계되도록 주차장 1개소 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368	감)1.6	366.4	-	
변경	1	주차장	양지읍 제일리 641번지 일원	368	감)1.6	366.4	2019.7.1 (용고345)	

3) 공원 (변경)

- 산업단지 내 종사자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1개소를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927	증)0.9	927.9		
변경	1	공원	소공원	양지읍 제일리 642-4번지 일원	927	증)0.9	927.9	2019.7.1. (용고345)	

4) 녹지 (변경)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음·공해 등으로부터의 완충기능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940	감)7.3	1,932.7	-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양지읍 제일리 산75-2번지 일원	1,940	감)7.3	1,932.7	2019.7.1. (용고345)	

5) 용수공급 (변경 없음)

- 용수공급은 지방급수구역으로 용인정수장을 거쳐 백원배수지로부터 공급되는 중 부대로2376번길의 배수관로(D100)에서 분기하여 사업지구 내 신설관로(D100)로 공급하도록 계획
- 용수량 : 138.6㎥/일

6) 우수처리 (변경 없음)

- 배수유역내 발생하는 우수는 단지내 우수관로를 신설하여 사업부지 북측의 기존 우수관 및 인근 구거로 방류토록 계획
- 우수유출량 : $1.89\text{m}^3/\text{sec}$

7) 하수처리 (변경 없음)

- 본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폐수는 없으나, (주)테스(A1-1) 공정상 공장의 연구시설 내 습식집진시설 가동에 따른 소량의 폐수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폐수발생이 예상되며, 발생폐수는 전량 위탁 처리 할 계획이고, 오수 처리는 단지 내 신설 오수관로(D250)를 통하여 오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북측 기 매설된 우수관로(D800)에 연결 처리토록 계획
- 오수처리시설용량 : $500\text{m}^3/\text{일}$
- 오수발생량 : $51.2\text{m}^3/\text{일}$
- 폐수발생량 : $30.1\text{m}^3/\text{일}$

8) 폐기물처리 (변경 없음)

-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전량위탁 처리할 계획

9) 전력 (변경 없음)

- 전력사용량은 $6,149\text{Mwh}/\text{년}$ 으로 단지내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할 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지원시설계획 (변경 없음)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가. 토지조서 (기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제일리	364	대	2,812	2,8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근저당권	
2	제일리	364-4	대	2,051	2,0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근저당권	
3	제일리	364-2	장	361	36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근저당권	
4	제일리	364-3	도	330	3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근저당권	
5	제일리	610-5	도	220	2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6	제일리	635	대	603	60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근저당권	
7	제일리	640-16	전	812	8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8	제일리	640-1	장	2,808	2,80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9	제일리	640-2	장	2,135	2,1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10	제일리	640-3	장	353	35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11	제일리	640-17	도	319	3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12	제일리	640-6	도	641	6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근저당권	311/ 6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13	주피티씨	-	-	-	330/ 641
13	제일리	640-7	장	3,397	3,39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근저당권	
14	제일리	640-8	도	327	3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근저당권	
15	제일리	640-9	장	3,968	3,96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근저당권	

(계속)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	제일리	640-10	장	2,652	2,65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13	㈜피티씨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용 인지점)	근저당권	
17	제일리	640-11	장	2,493	2,49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테스	-	-	-	
18	제일리	640-12	장	796	79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1	㈜테스	-	-	-	
19	제일리	640-13	장	1,492	1,49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13	㈜피티씨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용 인지점)	근저당권	
20	제일리	640-19	장	1,808	1,80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13	㈜피티씨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용 인지점)	근저당권	
21	제일리	640-18	차	848	84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테스	-	-	-	
22	제일리	640-15	도	361	36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근저당권	
23	제일리	641	답	1,174	1,17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4	제일리	642-4	전	1,531	1,53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5	제일리	642-2	전	73	7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6	제일리	643	전	1,422	1,4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7	제일리	644	전	1,425	1,4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8	제일리	645-1	전	3,124	3,1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9	제일리	646	전	1,336	1,33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계속)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0	제일리	765-10	구	460	460	-	농림축산 식품부	-	-	-	
31	제일리	765-5	구	153	15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32	제일리	765-6	대	219	2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	
33	제일리	765-7	대	168	16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 의도동) (성남지점)	-	
34	제일리	765-11	구	15	15	-	농림축산 식품부	-	-	-	
35	제일리	783-2	도	172	172	-	국토교통부	-	-	-	
36	제일리	784	구	407	407	-	농림축산 식품부	-	-	-	
37	제일리	산72-2	임	3,906	3,90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38	제일리	산72-3	임	307	3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39	제일리	산72-4	임	826	8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40	제일리	산73-1	임	505	50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41	제일리	산73-2	임	3,048	3,04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계속)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2	제일리	산73-4	임	1,187	1,18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43	제일리	산75-4	임	562	5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44	제일리	산75-5	임	2,590	2,59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합계	-	44필지	-	56,197	56,197	-		-			

가. 토지조서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제일리	364	대	2,812	2,8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2	제일리	364-4	대	2,051	2,0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3	제일리	364-2	장	361	36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4	제일리	364-3	도	330	3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5	제일리	610-5	도	220	2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6	제일리	635	대	603	60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7	제일리	640-16	전	812	8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8	제일리	640-1	장	2,808	2,80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9	제일리	640-2	장	2,135	2,1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10	제일리	640-3	장	353	35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11	제일리	640-17	도	319	3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12	제일리	640-6	도	641	6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311/6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13	주피티씨	-	-	-	330/641
13	제일리	640-7	장	3,397	3,39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14	제일리	640-8	도	327	3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15	제일리	640-9	장	3,968	3,96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16	제일리	640-10	장	2,652	2,65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13	주피티씨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계속)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	제일리	640-11	장	2,493	2,49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18	제일리	640-12	장	796	79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 일리 640-1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19	제일리	640-13	장	1,492	1,49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 일리 640-13	주피티씨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20	제일리	640-19	장	1,808	1,80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 일리 640-13	주피티씨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21	제일리	640-18	차	848	84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2	제일리	640-15	도	361	36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23	제일리	641	답	1,174	1,17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4	제일리	642-2	전	73	7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5	제일리	642-4	전	1,531	1,53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6	제일리	643	전	1,422	1,4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7	제일리	644	전	1,425	1,4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8	제일리	645-1	전	3,124	3,1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 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9	제일리	646	전	1,336	1,33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30	제일리	765-10	구	460	460	-	농림축산 식품부	-	-	-	
31	제일리	765-5	구	153	15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32	제일리	765-6	대	219	2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33	제일리	765-7	대	168	16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용인지점)	근저당권	
34	제일리	765-11	구	15	15	-	농림축산 식품부	-	-	-	
35	제일리	783-2	도	172	172	-	국토교통부	-	-	-	지적 공부 정리
36	제일리	784	구	407	407	-	농림축산 식품부	-	-	-	
37	제일리	산72-2	임	3,906	3,90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38	제일리	산72-3	임	307	3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39	제일리	산72-4	임	826	8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40	제일리	산73-1	임	505	50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41	제일리	산73-2	임	3,048	3,04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2	제일리	산73-4	임	1,187	1,18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43	제일리	산75-4	임	562	5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44	제일리	산75-5	임	2,590	2,59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용인지점)	근저당권	206/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500
합계	-	44필지	-	56,197	56,197	-		-			

가. 토지조서 (확정측량 반영 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제일리	791	장	19,116.4	19,116.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	제일리	792	장	3,313.4	3,313.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3	제일리	793	장	17,912.3	17,91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4	제일리	794	장	6,059.6	6,059.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5	제일리	795	공	927.9	927.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6	제일리	796	차	366.4	366.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7	제일리	797	대	1,531.4	1,53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8	제일리	798	도	106.1	106.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9	제일리	799	도	4,701.0	4,70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0	제일리	800	도	2,709.5	2,709.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1	제일리	801	공	1,932.7	1,93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합계		11필지		58,676.7	58,676.7						

※ 금번 변경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이며, 개별 필지의 권리 제한 사항(근저당 등)으로 인해 관계인 명단은 지적공부 정리 완료 후 확정될 예정임.

나. 물건세목 (변경없음)

연번	지장물위치		물건의종류	구조 또는 규격(m)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1	양지읍 제일리	364-1외 3필지	소매점	일반철골구조	703.72	㎡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9	
2	양지읍 제일리	363외 2필지	제조장	일반철골구조	379.95	㎡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9	
2-1			사무소	일반철골구조	379.95	㎡			
3	양지읍 제일리	640-7	일반공장	일반철골구조	748.00	㎡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9	
3-1			일반공장 (기숙사)	일반철골구조	149.60	㎡			
4	양지읍 제일리	640-9	일반공장	일반철골구조	420.00	㎡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9	
4-1			일반공장 (창고)	일반철골구조	249.60	㎡			
4-2			일반공장 (사무실)	일반철골구조	87.20	㎡			
4-3			일반공장 (연구실)	일반철골구조	172.00	㎡			
5	양지읍 제일리	640-11외 2필지	일반공장	일반철골구조	398.27	㎡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1	
5-1			기계실	일반철골구조	108.77	㎡			
5-2			로비, 대기실	일반철골구조	55.64	㎡			
5-3			일반공장 (화장실)	일반철골구조	31.36	㎡			
6	양지읍 제일리	640-1외 1필지	공장	일반철골구조	968.80	㎡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2374-36	1동
6-1			공장	일반철골구조	941.42	㎡			
7	양지읍 제일리	640-1외 1필지	공장	철근콘크리트 구조	847.34	㎡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2374-36	2동
7-1			공장	철근콘크리트 구조	474.88	㎡			
7-2			공장	철근콘크리트 구조	119.22	㎡			
7-3			공장	철근콘크리트 구조	305.2	㎡			
8	양지읍 제일리	640-13외 1필지	공장	철근콘크리트 구조	496.00	㎡	(주)피티씨 대표 차경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13	A동
8-1			공장	철근콘크리트 구조	496.00	㎡			
8-2			공장	철근콘크리트 구조	496.00	㎡			
9	양지읍 제일리	640-13외 1필지	공장	일반철골구조	380.00	㎡	(주)피티씨 대표 차경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13	가동
9-1			공장 (연구소)	일반철골구조	179.17	㎡			
9-2			공장(로비, 화장실)	일반철골구조	39.00	㎡			
9-3			공장 (휴게실)	일반철골구조	29.15	㎡			
10	양지읍 제일리	640-13외 1필지	공장(창고)	일반철골구조	841.86	㎡	(주)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2374-39	나동
10-1			공장	일반철골구조	115.00	㎡			
10-2			공장(창고)	일반철골구조	956.86	㎡			

연번	지장물위치		물건의종류	구조 또는 규격(m)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11	양지읍 제일리	640-16	대문	철재구조	H4.5*6	m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500
11-1			펜스	철재구조	H1.5*310	m			
11-2			목련	R20*H4.5	1	주			
11-3			단풍	R5*H2.0	3	주			
11-4			포도나무	철재 지지대 포함	1	식			
11-5			두릅나무	R5*H3.0	110	주			
11-6			벗나무	R30*H5.5	10	주			
11-7			살구나무	10년생	3	주			
11-8			자두나무	10년생	9	주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500
11-9			복숭아나무	10년생	7	주			
11-10			배나무	10년생	7	주			
11-11			오디나무	10년생	6	주			
11-12			포도나무	10년생	10	주			
11-13			백송	R15*H4.5	1	주			
11-14			보리수	10년생	3	주			
11-15			앵두나무	10년생	1	주			
11-16			주목	R5*H2.0	1	주	(주)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101/500
11-17			공작단풍	W3.0*H2.0	1	주			
11-18			모과나무	10년생	4	주			
11-19			라일락	10년생	2	주			
11-20			개두릅	10년생	1	주			
11-21			철쭉	10년생	1	주			
11-22			대추나무	10년생	20	주			
11-23			화양목	10년생	1	주			
11-24			화살나무	10년생	1	주			
11-25		640-16, 645-1	소나무	100년생	70	주			
12	양지읍 제일리	642-2	전기시설 (관정포함)	관정포함 (소공)	1	식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500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500
							(주)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101/500

연번	지장물위치		물건의종류	구조 또는 규격(m)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13	양지읍 제일리	644	비닐하우스 (1)	철재, 비닐, 차광막, 덮개	122	㎡	㈜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500
13-1			컨테이너	-	1	식			
13-2			외등	전기설비 포함	1	식			
13-3			물탱크	-	1	개			
13-4			울타리	그물망, 철재기둥	1	식			
13-5			비닐하우스 (2)	철재(비닐없음)	12	㎡			
13-6			건사(1)	철재,비닐,차광막 (PVC건사 2개포함)	1	식	㈜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500
13-7			건사(2)	철재, 차광막	9.8	㎡			
13-8			창고(1)	철재기둥	136.29	㎡			
13-9			창고(2)	철재, 비닐	61.95	㎡			
13-10			계사	철재, 샌드위치 판넬지붕	1	식			
13-11			전기시설	-	1	식			
13-12			고무보트	-	1	식			
13-13			트랙터	-	1	대			
13-14			동력분무기	-	1	대	㈜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101/500
13-15			화목난로	철재, 연통포함	1	식			
13-16			가스렌지	-	1	대			
13-17			관정	관정보호사 및 수도시설 포함	1	식			
13-18			개수대	시멘트	1.44	㎡			
13-19			철재선반	앵글	1	식			
13-20			바베큐통	-	1	대			
13-21			바닥포장	비닐하우스(1) 내 벽돌, 시멘트	122	㎡			
13-22			동산이전비	-	1	식			
14	양지읍 제일리	산73-1	분묘	합장	1	기	㈜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500
14-1			분묘	단장	2	기	㈜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500
14-2			향나무	R25*H4.5	2	주		㈜피티씨	101/500
14-3			잣나무	묘목	1	주			
14-4			철쭉	W2.0*H2.0	3	주			
15	양지읍 제일리	산75-4 산75-5	주목	R8*H2.0	85	주	㈜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500
							㈜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500
							㈜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101/500

9.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6,197	감)229.8	55,967.2	10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56,197	감)229.8	55,967.2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2	용인 제일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지읍 제일리 640-7번지 일원	56,197	감)229.8	55,967.2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변경)

① 도로 총괄표 (변경)

(기정)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297	4,814	-	-	-	1	282	4,706	1	15	108
대로	-	-	-	-	-	-	-	-	-	-	-	-
중로	1	282	4,706	-	-	-	1	282	4,706	-	-	-
소로	1	15	108	-	-	-	-	-	-	1	15	108

(변경)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297	4,807.1	-	-	-	1	282	4,701	1	15	106.1
대로	-	-	-	-	-	-	-	-	-	-	-	-
중로	1	282	4,701	-	-	-	1	282	4,701	-	-	-
소로	1	15	106.1	-	-	-	-	-	-	1	15	106.1

② 도로 결정 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2개소				-	297	-	-	-	-	-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282	제일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제일일반산단 지구계	일반 도로	-	'19.07.01. (용고2019-345)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282	제일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제일일반산단 지구계	일반 도로	-	'19.07.01. (용고2019-345)	면적 변경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5	제일일반산단 지원시설용지	중로 2-1	일반 도로	-	'19.07.01. (용고2019-345)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5	제일일반산단 지원시설용지	중로 2-1	일반 도로	-	'19.07.01. (용고2019-345)	면적 변경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변경)

① 공원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소공원	양지읍 제일리 642-4번지 일원	927	증)0.9	927.9	'19.07.01. (용고2019-345)	

②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변경)

(기정)

시설 구분	시 설 명	시 설 면 적(㎡)			비 고
		부지면적(㎡)	건축규모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총 계		927	-	-	
공원 시설	소 계	173	-	-	시설을 18.7%
	도로 및 광장	173	-	-	
	조경시설	-	-	-	
	휴양시설	-	-	-	
	운동시설	-	-	-	
	관리시설	-	-	-	
녹지 및 기타		754	-	-	

(변경)

시설 구분	시 설 명	시 설 면 적(㎡)			비 고
		부지면적(㎡)	건축규모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총 계		927.9	-	-	
공원 시설	소 계	173.0	-	-	시설을 18.6%
	도로 및 광장	173.0	-	-	
	조경시설	-	-	-	
	휴양시설	-	-	-	
	운동시설	-	-	-	
	관리시설	-	-	-	
녹지 및 기타		754.9	-	-	

③ 공원조성계획 세부결정조서 (변경)
(기정)

구 분	시 설 명	번 호	부지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27	-	-	23개소	
공원시설	소계		173	-	-	23개소	18.7%
도로 및 광장	소 계		173	-	-	-	
	소 로		173	-	-	7노선	
조경시설	소 계		-	-	-	1개소	
	파 고 라	①	-	-	-	1개소	
휴양시설	소 계		-	-	-	6개소	
	평 의 자	②	-	-	-	3개소	파고라하부
	가비온벤치	③	-	-	-	3개소	
운동시설	소 계		-	-	-	2개소	
	야외운동시설	④	-	-	-	2개소	
관리시설	소 계		-	-	-	14개소	
	이용안내판	⑤	-	-	-	1개소	
	청소도구함	⑥	-	-	-	1개소	
	공 원 등	⑦	-	-	-	3개소	CCTV 부착
	볼 라 드 등	⑧	-	-	-	9개소	
녹지 및 기타	소 계		754	-	-		
	녹지 및 기타		754	-	-		

(변경)

구 분	시 설 명	번 호	부지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27.9	-	-	23개소	
공원시설	소계		173.0	-	-	23개소	18.6%
도로 및 광장	소 계		173.0	-	-	-	
	소 로		173.0	-	-	7노선	
조경시설	소 계		-	-	-		
			-	-	-		
휴양시설	소 계		-	-	-	7개소	
	파 고 라	①	-	-	-	1개소	파고라하부
	평 의 자	②	-	-	-	3개소	
	가비온벤치	③	-	-	-	3개소	
운동시설	소 계		-	-	-	2개소	
	야외운동시설	④	-	-	-	2개소	
관리시설	소 계		-	-	-	14개소	
	이용안내판	⑤	-	-	-	1개소	
	청소도구함	⑥	-	-	-	1개소	
	공 원 등	⑦	-	-	-	3개소	CCTV 부착
	볼 라 드 등	⑧	-	-	-	9개소	
녹지 및 기타	소 계		754.9	-	-		
	녹지 및 기타		754.9	-	-		

④ 공원조성계획 도로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01.7	173.0				
	소로	3	가-1	2.0	15.6	31.2	진입로	공원동측도로	녹 지	
			가-2	1.5	29.1	43.7	연결로	가 - 1	가 - 3	
			가-3	2.0	16.0	32.0	연결로	녹 지	녹 지	
			가-4	1.5	6.2	9.3	연결로	가 - 3	가 - 1	
			가-5	1.5	7.7	11.6	연결로	가 - 1	가 - 6	
			가-6	2.0	9.0	18.0	진입로	공원남측주차장	녹 지	
			가-7	1.5	18.1	27.2	연결로	가 - 6	가 - 3	

(나) 녹지 (변경)

① 녹지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양지읍 제일리 산75-2번지 일원	1,940	감)7.3	1,932.7	'19.07.01. (용고2019-345)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산업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계			－	－	46,614	－
A1-1	A1	46,614	1	양지읍 제일리 640-1번지 일원	19,205	제조업
A1-2			2	양지읍 제일리 640-9번지 일원	17,993	제조업
A1-3			3	양지읍 제일리 640-10번지 일원	6,094	제조업
A1-5			5	양지읍 제일리 640-13번지 일원	3,322	제조업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계			－	－	46,401.7	－
A1-1	A1	46,401.7	1	양지읍 제일리 640-1번지 일원	19,116.4	제 조업
A1-2			2	양지읍 제일리 640-9번지 일원	17,912.3	제 조업
A1-3			3	양지읍 제일리 640-10번지 일원	6,059.6	제 조업
A1-5			5	양지읍 제일리 640-13번지 일원	3,313.4	제 조업

(2) 지원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D1-1	D1	1,534	1	양지읍 제일리 640번지 일원	1,534	지원시설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D1-1	D1	1,531.4	1	양지읍 제일리 640번지 일원	1,531.4	지원시설

(3) 주차장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P1-1	P1	368	1	양지읍 제일리 641번지 일원	368	주차장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P1-1	P1	366.4	1	양지읍 제일리 641번지 일원	366.4	주차장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1	A1	용 도	■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하며, 건물 옥상에 배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불소화물, 염소 및 염화수소, 1,3-부타디엔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및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아니하는 5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40m 이하
		배 치	• 출입구 방향으로 개방감을 갖도록 배치
		형 태	•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외관 권장
		색 채	• 지붕과 벽면이 구별되는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경비실 제외) - 단지 북측 임야경계부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한계선 설치 : 10m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2 ~ A1-3 A1-5	A1	용 도	■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하며, 건물 옥상에 배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및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아니하는 5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40m 이하
		배 치	• 출입구 방향으로 개방감을 갖도록 배치
		형 태	•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외관 권장
		색 채	• 지붕과 벽면이 구별되는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경비실 제외) - 단지 북측 임야경계부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한계선 설치 : 10m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1	D1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하며, 건물 옥상에 배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40m 이하
		배 치	• 출입구 방향으로 개방감을 갖도록 배치
		형 태	-
		색 채	• 입면배색을 통한 단조로움 탈피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3)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P1-1	P1	용 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의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편의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40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계 획 내 용

-

-

• 차량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 주요 유치업종 계획

- 제조업 중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지구단위계획 이외의 사항은 개별법령에 따름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6.07)에 따라 전체면적의 20% 생태면적 확보

- 기정

구분	면적 (㎡)	가중치	생태면적 (㎡)	생태 비율 (%)	비고
산업 시설용지	46,614	-	8,155	14.51	
산업용지1	19,205	0.175	3,360	5.98	(주)테스
산업용지2	17,993	0.175	3,148	5.60	(주)에코니티
산업용지3	6,094	0.175	1,066	1.90	(주)피티씨-1
산업용지5	3,322	0.175	581	1.03	(주)피티씨-2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6.39%,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14.51% 총 20.9%

- 변경

구분	면적 (㎡)	가중치	생태면적 (㎡)	생태 비율 (%)	비고
산업 시설용지	46,401.7	-	8,060.0	14.40	
산업용지1	19,116.4	0.174	3,320.6	5.93	(주)테스
산업용지2	17,912.3	0.174	3,111.4	5.56	(주)에코니티
산업용지3	6,059.6	0.006	34.2	0.06	(주)피티씨-1
산업용지5	3,313.4	0.481	1,593.8	2.85	(주)피티씨-2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6.5%,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14.4% 총 20.9%

10.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산업단지 준용사업) (변경)

가. 사업개요 (변경)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7번지 일원
- 면 적 : 진입도로 (기정) 2,721㎡ (변경) 2,709.5㎡

나. 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국도42호선(대로1-5호선)으로부터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다. 사업시행자 (변경)

- 시행자 : (기정) (주)에코니티 대표이사 장문석 (대표시행자)

(주)테 스 대표이사 주승일 이재호

(주)피 티 씨 대표이사 차경천 박종기

(변경) (주)에코니티 대표이사 장문석 (대표시행자)

(주)테 스 대표이사 주재영 이재호

(주)피 티 씨 대표이사 차경천 박종기

- 주 소 : (주)에코니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9 (주)테 스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피 티 씨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라.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19년 7월 1일 ~ 2026년 06월 30일

(변경) 2019년 7월 1일 ~ 2027년 06월 30일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사업으로 개발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국도42호선(대로1-5호선)으로부터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바.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진입도로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제일리	605-13	대	7	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	제일리	605-14	철	106	10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3	제일리	605-15	도	41	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4	제일리	605-16	도	9	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5	제일리	606-5	전	72	7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6	제일리	606-6	도	88	8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7	제일리	607-3	대	13	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	제일리	607-4	도	196	19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9	제일리	607-5	도	40	4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0	제일리	609-3	전	120	1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1	제일리	610-2	답	377	37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2	제일리	610-4	도	482	48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3	제일리	611-10	답	34	3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4	제일리	611-11	답	333	33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5	제일리	611-12	답	132	13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	제일리	611-13	창	42	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7	제일리	611-7	도	59	5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8	제일리	611-8	도	68	6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19	제일리	611-14	도	59	5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주에코니티	-	-	-	193/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주테스	-	-	-	206/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주피티씨	-	-	-	101/ 500
20	제일리	719-5	도	101	101	-	국토교통부	-	-	-	
21	제일리	719-7	도	342	342	-	국토교통부	-	-	-	
합계	-	21필지	-	2,721	2,721	-	-	-	-	-	

○ 진입도로 물건세목

연번	지장물위치		물건의종류	구조 또는 규격(m)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1	양지읍 제일리	605-14	펜스	함석(보안시설 포함, H2.8)	67.48	m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 500
1-1		605-5	동산이전비	-	1	식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 500
		611-10					(주)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101/ 500
2	양지읍 제일리	605-15	목련	R25*H20	3	주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 500
2-1		606-6	목련	R15*H5.0	3	주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 500
2-2			배수로	-	1	식			
2-3		607-3	목련	R15*H4.5	3	주			
2-4			목련	R25*H4.5	1	주	(주)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101/ 500
2-5			소나무	R30*H5.5	1	주			
2-6			무궁화	W3.5*H3.5	1	주			
2-7			화당	6.5m*H1.2	1	식			
3	양지읍 제일리	609-3	태양광시설	-	1	식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 500
3-1			주차시설	목재,썬라이트 지붕, 7.7*6.4	49.28	㎡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 500
3-2			목련	R15*H4.0	10	주			
3-3			화단	자연석	1	식			
3-4			개나리울타리	27m	1	식	(주)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101/ 500
4	양지읍 제일리	610-4	전기시설	관정포함(소공)	1	식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 500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 500
							(주)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101/ 500
5	양지읍 제일리	611-13	출입문시설	철재 (H1.5*4.5m)	1	식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 500
			펜스	철재 (H1.2*2m*2)	1	식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 500
5-1							(주)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101/ 500
6	양지읍 제일리	611-14	바닥포장	콘크리트 (3.0*4.5)	13.50	㎡	(주)에코니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41	193/ 500
			목련	R30*H5.0	1	주	(주)테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6	206/ 500
6-1							(주)피티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 2374-39	101/ 500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가) 도로 총괄표 (변경)

(기정)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163	2,721	-	-	-	1	163	2,721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63	2,721	-	-	-	1	163	2,721	-	-	-
소로	-	-	-	-	-	-	-	-	-	-	-	-

(변경)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163	2,709.5	-	-	-	1	163	2,709.5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63	2,709.5	-	-	-	1	163	2,709.5	-	-	-
소로	-	-	-	-	-	-	-	-	-	-	-	-

(나) 도로 결정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63	제일일반산단 지구계	대로1-5	일반 도로	-	'19.07.01. (용고2019-345)	
변경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63	제일일반산단 지구계	대로1-5	일반 도로	-	'19.07.01. (용고2019-345)	면적 변경

11. 관계도서는 용인시 기업산단입지과(☎ 031-6193-28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8차 변경)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6-397호(2026. 06. 30.)로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8차 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6. 06. 30.

용 인 시 장

1. 산업단지의 개요 (변경)

가. 산업단지 위치 및 관리기관 (변경)

-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640-7번지 일원
- 산업단지 면적 : (기정) 56,197㎡
(변경) 55,967.2㎡ 감) 229.8㎡
- 관리기관 : 용인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나. 조성목적 (변경없음)

- 실수요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산업 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지역의 개발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 조성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지화 및 체계적·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 추진경위

- 2015.06.22. : 투자의향서 제출(사업시행자 → 용인시)
- 2016.04.06. :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경기도고시 제2016-5078호)
- 2016.07.06.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용인시)
- 2016.12.07. : 산업단지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등 협의 완료
- 2018.06.20.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18.10.24.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19.04.12. :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경기도고시 제2019-5052호)
- 2019.05.2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조건부 적정)
- 2019.07.01.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19-345호)
- 2019.12.2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19-676호)
- 2020.02.2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용인시고시 제2020-87호)
- 2020.09.04. : 산업단지계획(2차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20-433호)
- 2021.05.26. : 산업단지계획(3차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21-291호)
- 2021.12.29. : 산업단지계획(4차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21-717호)
- 2022.12.16. : 산업단지계획(5차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22-614호)
- 2023.09.14. : 산업단지계획(6차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23-521호)
- 2024.06.17. : 산업단지계획(7차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24-321호)
- 2025.01.10. : 산업단지계획(8차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25-16호)
- 2025.06.19. : 산업단지계획(9차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25-308호)
- 2025.12.24. : 산업단지계획(10차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25-740호)
- 2026.06.30. : 산업단지계획(11차변경) 승인 고시(용인시고시 제2026-397호)

라. 분양현황 (변경)

○ 실수요자(100%) 개발방식으로 분양가능면적을 사업시행자가 사용예정
-기정

구 분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사업 시행자
		계	분양	미분양			
				소계	조성	미조성	
합 계	56,197	48,516	-	48,516	-	48,516	(주)에코니티, (주)테스, (주)피티씨
산업시설구역	46,614	46,614	-	46,614	-	46,614	
지원시설구역	1,534	1,534	-	1,534	-	1,534	
공공시설구역	5,182	368	-	368	-	368	
녹지구역	2,867	-	-	-	-	-	

-변경

구 분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사업 시행자
		계	분양	미분양			
				소계	조성	미조성	
합 계	55,967.2	48,299.5	-	48,299.5	-	48,299.5	(주)에코니티, (주)테스, (주)피티씨
산업시설구역	46,401.7	46,401.7	-	46,401.7	-	46,401.7	
지원시설구역	1,531.4	1,531.4	-	1,531.4	-	1,531.4	
공공시설구역	5,173.5	366.4	-	366.4	-	366.4	
녹지구역	2,860.6	-	-	-	-	-	

마. 입주현황 (변경)

○ 실수요자(100%) 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조성 및 사용예정
-기정

구 분	입주업체수(개소)				면 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합 계	5	5	-	-	48,516	46,614	1,534	368
'20.8월 현재	-	-	-	-	-	-	-	-
향후계획	5	5	-	-	48,516	46,614	1,534	368

-변경

구 분	입주업체수(개소)				면 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합 계	4	4	-	-	48,299.5	46,401.7	1,531.4	366.4
'26.6월 현재	-	-	-	-	-	-	-	-
향후계획	4	4	-	-	48,299.5	46,401.7	1,531.4	366.4

바.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변경없음)

시설명	규모 및 용량	조성기관
도 로	- 단지내 도로 - 중로2류(L=282m, B=15m) - 소로3류(L=15m, B=6m) - 단지외 도로 - 중로2류(L=163m, B=15m)	(주)에코니티, (주)테스, (주)피티씨
용 수	용수량 : 138.6m³/일	(주)에코니티, (주)테스, (주)피티씨
전 력	전력사용량 : 6,149Mwh/년	한국전력공사
오·폐수처리	- 폐수발생시 전량 위탁처리하며, 오수는 단지내 신설 오수관로를 통하여 오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북측 기 매설된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 - 오수처리시설용량 : 500m³/일 - 오수발생량 : 51.2m³/일 - 폐수발생량 : 30.1m³/일	(주)에코니티, (주)테스, (주)피티씨
폐기물처리	사업장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전량 처리대행 업체에 위탁 처리	개별공장별 위탁처리

2.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변경없음)

- 실수요 기업에 의한 수요자 위주의 공급정책에 부응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용인 동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산업, 연구 기능의 일 반산업단지 건설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변경)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1)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기정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 고
총 계		56,197	100.0	
산업시설 구 역	산업시설용지	46,614	82.9	
지원시설 구 역	지원시설용지	1,534	2.7	
공공시설 구 역	소 계	5,182	9.2	
	도 로	4,814	8.6	중로2류(1), 소로3류(1)
	주 차 장	368	0.6	주차장(1)
녹지구역	소 계	2,867	5.2	
	완충녹지	1,940	3.5	완충녹지(1)
	공 원	927	1.7	소공원(1)

-변경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 고
총 계		55,967.2	100.0	
산업시설 구 역	산업시설용지	46,401.7	82.9	
지원시설 구 역	지원시설용지	1,531.4	2.7	
공공시설 구 역	소 계	5,173.5	9.2	
	도 로	4,807.1	8.6	중로2류(1), 소로3류(1)
	주 차 장	366.4	0.6	주차장(1)
녹지구역	소 계	2,860.6	5.2	
	완충녹지	1,932.7	3.5	완충녹지(1)
	공 원	927.9	1.7	소공원(1)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붙임1

(3) 용도별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 붙임2

(4) 입주 우선순위

○ 해당 없음

(5) 입주절차

○ 해당 없음

나. 산업시설구역 (변경)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변경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C29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갖추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2) 입주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한하며, 건물 옥상에 배치)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코드)	업 종 명	비 고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주)에코니티, (주)테스, (주)피티씨

※ 민간실수요자 개발방식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주)에코니티, (주)테스, (주)피티씨 3개사가 사용

(2) 입주 제한업종 (변경없음)

- A1-1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및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아니하는 5종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불소화물, 염소 및 염화수소, 1,3-부타디엔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 A1-2 ~ A1-3, A1-5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및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아니하는 5종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4)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가) 세부배치계획 (변경)

○기정

구분			업 종 명		비 고
			필지수	면적(m ²)	
합 계			4	46,614	
산업 시설 구역	-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19,205	(주)테스
	-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17,993	(주)에코니티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6,094	(주)피티씨
	-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3,322	(주)피티씨

○변경

구분			업 종 명		비 고
			필지수	면적(m ²)	
합 계			4	46,401.7	
산업 시설 구역	-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19,116.4	(주)테스
	-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17,912.3	(주)에코니티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6,059.6	(주)피티씨
	-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3,313.4	(주)피티씨

나) 배치기준 (변경없음)

○ 실수요기업의 현실이용현황을 감안한 입주업종 배치

다) 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 : 붙임3

다.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입주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3.가.(3)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신설)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하며, 건물 옥상에 배치)
- ※ 민간실수요자 개발방식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주)에코니티, (주)테스, (주)피티씨 3개사가 사용

(2) 입주 제한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제외)
-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한하며, 건물 옥상에 배치)

라. 공공시설구역 (변경없음)

(1) 설치할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범위

- 공공·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및 주차장

마. 녹지구역 (변경없음)

(1) 설치할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물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변경없음)

가. 일반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용지 등 관리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등은 산집법과 산입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제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다.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 면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함)의 최소 분할면적은 900㎡ 이상으로 함
- 다만,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 및 획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라.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는 환경관련 법률, 시의 조례 및 본 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내 공원과 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

마.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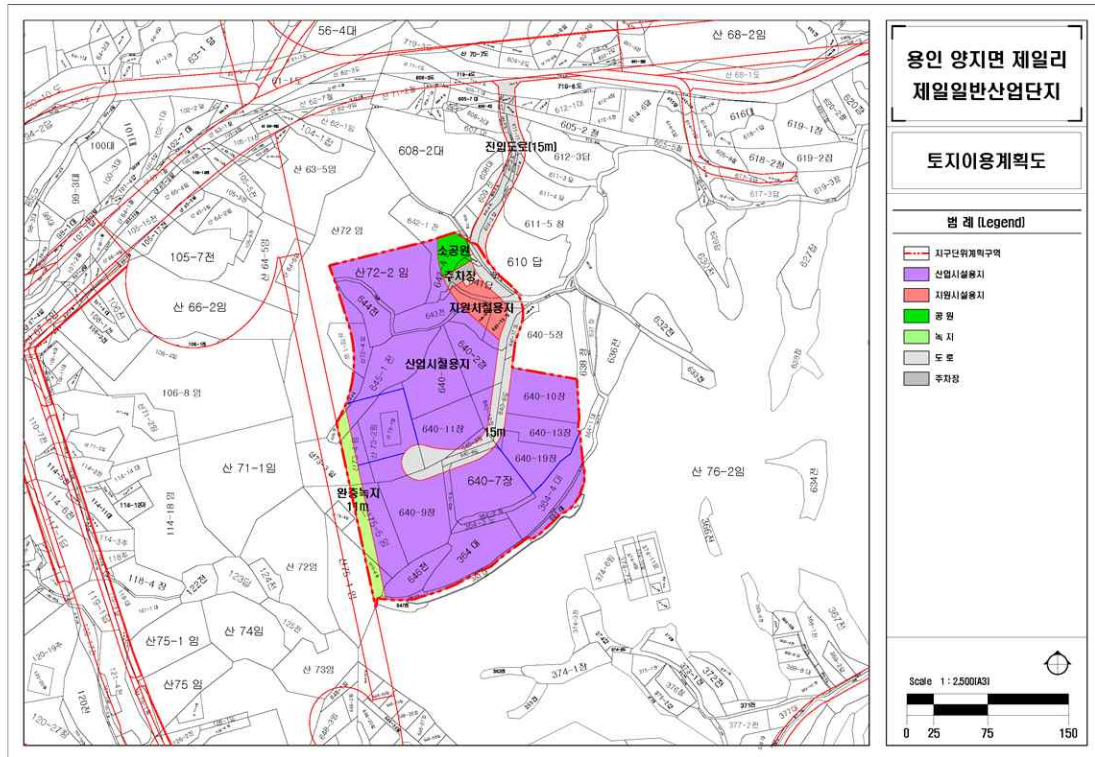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기반시설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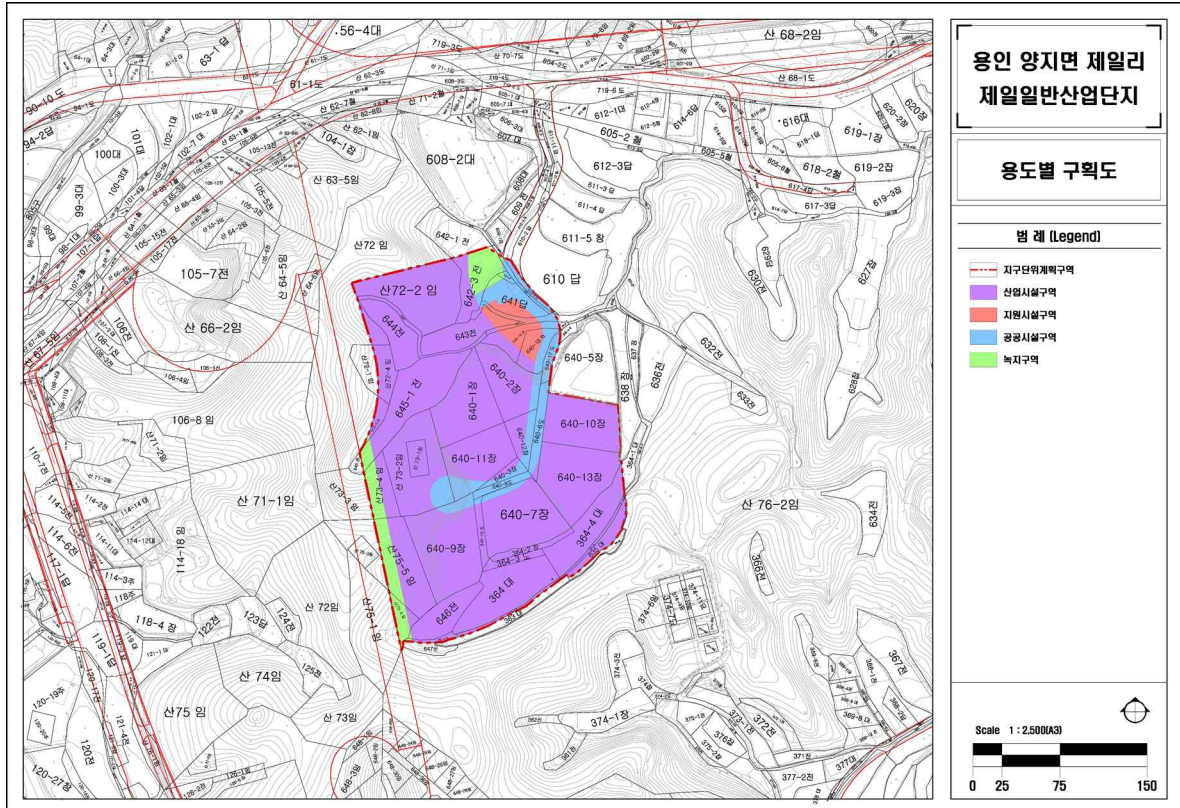
- 산업단지 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붙임1]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



○ 용도별 구획도



[붙임2] 용도별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1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하며, 건물 옥상에 배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불소화물, 염소 및 염화수소, 1,3-부타디엔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및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아니하는 5종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40m이하)
		배 치		· 출입구 방향으로 개방감을 갖도록 배치
		형 태		·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외관 권장
		색 채		· 지붕과 벽면이 구별되는 색채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 3m (경비실 제외) · 단지 북측 임야경계부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한계선 설치 : 10m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2~3,5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하며, 건물 옥상에 배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및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아니하는 5종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40m이하)
		배 치		• 출입구 방향으로 개방감을 갖도록 배치
		형 태		•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외관 권장
		색 채		• 지붕과 벽면이 구별되는 색채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 3m (경비실 제외) • 단지 북측 임야경계부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한계선 설치 : 10m

○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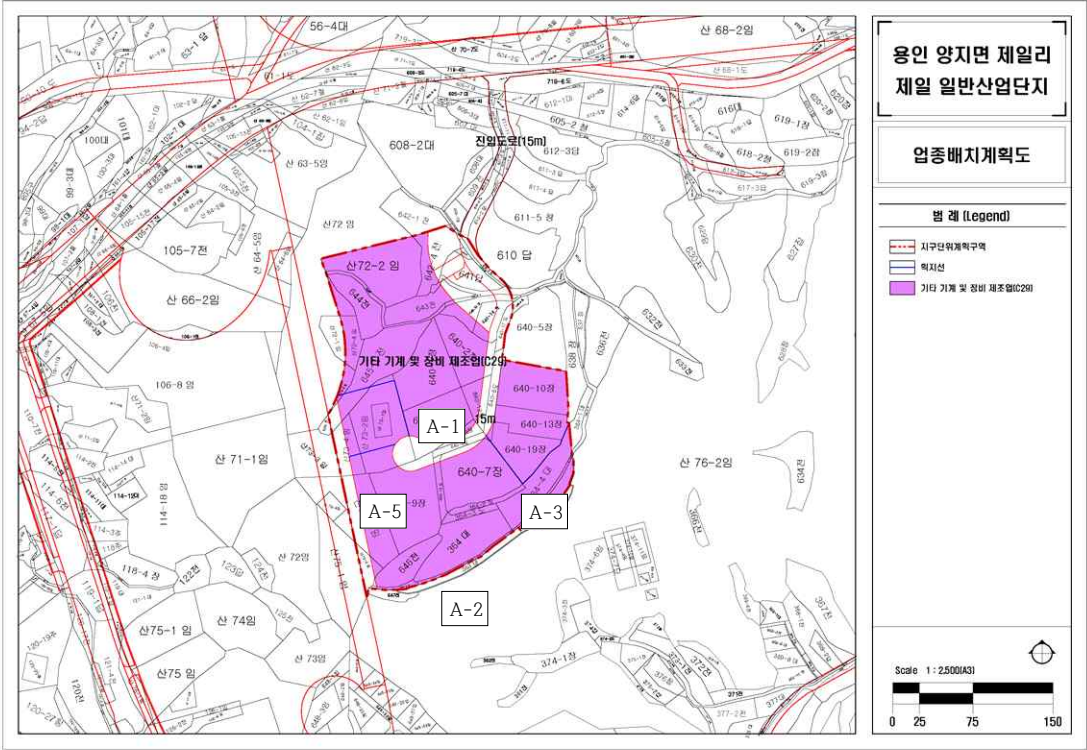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제외)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하며, 건물 옥상에 배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40m 이하)
		배 치		• 출입구 방향으로 개방감을 갖도록 배치
		형 태		-
		색 채		• 입면배색을 통한 단조로움 탈피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 3m

○ 주차장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P1	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의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편의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40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붙임3] 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 (변경없음)

○ 업종배치계획도



공 고

- 1.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483-4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중로 1-49호)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 2. 같은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30.
용 인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1	49	20~47.3	보조간선 도로	374	중로 1- 물류 외1	중로 3-33	일반도로	-	2003.01.23. (용고제13호)	
시행	중로	1	49	20	보조간선 도로	228	고림동 483-4	고림동 862-4	일반도로	-		일부 구간 시행

- 나.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1-49	중로 1-49	·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구역 경계 변경	· 사면부 제척 및 분할측량 성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 실시계획 작성(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483-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 1-49호 개설공사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 성명 : 용인시장(도로건설과)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24. 10. 21. ~ 2026. 7. 31.

└ 변경 : 2024. 10. 21. ~ 2027. 9. 30.

마. 사업 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1	49	20~ 47.3	보조간선 도로	374	중로 1- 물류 외1	중로 3-33	일반도로	-	2003.01.23. (용고제13호)	
시행 변경	중로	1	49	20	보조간선 도로	228	고림동 483-4	고림동 862-4	일반도로	-		일부 구간 시행
	중로	1	49	20	보조간선 도로	228	고림동 483-4	고림동 486	일반도로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열람기간 : 시보 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2026. 6. 30. ~ 2026. 7. 14.)

■ 열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 031-6193-3291 : 실시계획 고시 절차 등 관련 문의
용인시청 도로건설과 ☎ 031-6193-3319 : 토지보상 · 공사계획 등 관련 문의

■ 열람사항 : 실시계획 작성 사항 및 관계도서

■ 의견제출 방법

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종로1-49호선)						7,048.9	6,389.9	9,507.8	6,176.8						
1	고림동	506-20	506-20	대	대	115.5	115.5	115.5	115.5	고림4통 새마을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번길 ***				
										최*복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동 ****호(송동, 동탄린*****)				
2	고림동	506-21	506-21	장	장	38.5	38.5	38.5	38.5	용인시					
3	고림동	506-17	506-17	대	대	40.4	40.4	40.4	40.4	최*복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동 ****호(송동, 동탄린*****)				
4	고림동	506-19	506-19	전	전	107.2	107.2	107.2	107.2	성*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 **동 ****호(고림동, 금마들**아파트)				
5	고림동	508-3	508-3	전	전	1.7	1.7	1.7	1.7	용인시					
6	고림동	506-18	506-18	답	답	227	227	227	227	용인시					
7	고림동	863-12	863-12	도	도	334.9	334.9	292.8	292.8	국토 교통부					
8	고림동	-	863-13	-	도	-	-	42.1	42.1	국토 교통부					
9	고림동	485-9	485-9	전	전	234	234	204.2	204.2	용인시					
10	고림동	-	485-26	-	전	-	-	29.8	29.8	용인시					
-	고림동	483-15	-	과	-	213.1	213.1	-	-	김*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번길 **-(운중동)	포곡 농업 협동 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번길	***권 **권	
11	고림동	483-7	483-7	전	전	4.4	4.4	4.4	4.4	용인시					
12	고림동	483-14	483-14	전	전	1,398.8	1,398.8	1,398.8	1,398.8	문*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대대로***번길 **				
13	고림동	483-4	483-4	전	전	570.5	570.5	563.1	563.1	용인시					
14	고림동	-	483-18	-	전	-	-	5.7	5.7	용인시					
15	고림동	-	483-17	-	전	-	-	1.7	1.7	용인시					
16	고림동	485-23	485-23	전	전	919.2	919.2	919.2	919.2	이*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 관악현대아파트 ****-****				
17	고림동	485-22	485-22	대	대	8	8	8	8	우리**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층(역삼동)				
18	고림동	485-14	485-27	대	대	448	99	99	99	용인시					
19	고림동	485-24	485-24	대	대	1.7	1.7	1.7	1.7	김*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번길 *** (고림동)	용인 산림 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 (미평동)	***권 **권	
20	고림동	485-18	486	전	도	117	117	5,353	2,068	용인시					
	고림동	863-2		도		497	49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고림동	863-5		도		76	76								
	고림동	485-20		전		1	1								
	고림동	485-11		대		23	23								
	고림동	503-108		전		135	135								
	고림동	503-100		대		127	127								
	고림동	485-16		전		134	134								
	고림동	485-12		대		149	149								
	고림동	485-19		대		340	340								
	고림동	485-17		대		9	9								
	고림동	485-10		대		19	19								
	고림동	485-4		전		122	101								
	고림동	863-4		도		145	145								
	고림동	485-15		대		36	28								
	고림동	485-13		대		2	1								
	고림동	863-9		도		69	36								
	고림동	863-8		도		54	1								
	고림동	503-102		대		1	1								
	고림동	486		답		23	21								
	고림동	486-1		도		40	40								
	고림동	862-5		구		1	1								
	고림동	862-3		구		62	3								
	고림동	862-4		구		58	57								
	고림동	487-24		도		38	2								
	고림동	1018-1		도		39	1								
고림동	861-2	도	55	3											
21	금어리	725-2	725-2	구	도	14	8	54	8	용인시					